제45회 제1차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4289년 1월 30일 상오 10시 25분

2. 폐 의 : 단기 4289년 1월 30일 하오 1시 40분
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
4. 사 회 : 의장 박찬규

5. 출석의원

재적의원 21명, 출석의원 16명 결석의원 이소규, 임일남, 문택호, 김길환, 이문길 각 의원

6. 출석공무원

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(除戶兵) 서기 박찬대

- 7. 의사일정
- **◆**보고사항
- 1) 제44회 제2차 회의록 통과
- 2) 항동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서 보고
- 3)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 등 통행로 변경 진정보고
- 4)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대표자 회의참석 결과보고
- 5) 재건주택 건축문제 조사 결과보고
- ◆부의사항

- 1) 목포시직원 신원보증 조례 개정의 건
- 2) 목포시공식조례 개정의 건
- 3) 목포시의회 권한위임 조례 개정의 건
- 4)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
- 5)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
- 6)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설치안
- 7)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,출 예산안
- 8) 기타
 - 가. 상수도 설치의 건(나주읍장 나주읍 의장 통고문)
 - 나. 항동시장 관리의 건
- 8. 토의사항
 - ◆ 보고사항
- ※ 가. 제44회 제2차 회의록 낭독본 건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
- ※ 나. 만호동 거주 안강생 외 7인으로부터 제출한 항동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서 내용을 서기 박찬대 낭독
- ※ 다. 용당, 산정, 동민으로부터 제출한 연동 간통도로에 대한 자동차등 통행로 변경 진정서 내용을 서기 박찬대 낭독
- 이 양 진정 사항을 기타사항으로 토의할 것을 동의. 재청

동의제안자 : 김영완 의원

표결결과

- (나)항 재석 16명중 가 13표 가결
- (다)항 재석 16명중 만장일치 가결
- ※ 라.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대표자 회의참석 결과보고

본 건 당 의회 참석자 부의장 이소규 불참으로 차기 의회에서 보고키로 결 의

※ 마. 재건 주택건축문제 재조사 결과보고

- 본 건에 있어서는, 당시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로서 공개불능의 성질의 것이오니 비밀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김자홍 의원의 발언이 있었음
- 상기 5건 보고 이외에, 홍업은행장으로부터의 목포지점 잔류에 대한 성원 요망의 전문 및 중앙으로부터의 부담금 납부요망의 전문과 도의회의장으로 부터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요구문의 낭독이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 었음

※ 바. 유달동 수도설치 문제에 대하여

본 건에 관하여는 수도설치 특별조사위원, 정응표 김창현, 손백수 각 의원으로부터 조사 결의한 다음 건의서 내용의 낭독이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

- 1. A급수전은 당초설계 장소에서 B급수전 수평까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할 것
- 2. B급수관은 당초설계 장소위치선로에서 하부 김영균댁 정원을 통하여 부 설할 것
- 3. B급수전은 당초설계 장소에서 하부 석조 계단하 지점에다 설치할 것
- 4. C급수전은 AB급수전의 수압에 지장이 없는 한 곡선에서 배수지측으로 급수전 1전을 증설 할 것

※ 8.15 해방 후 시민 총 봉기하여 거시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도 및 중앙 요로에 절충하여 당지에 건축 개교케된 전남대학교 목포상과대학에 대하여 당교 모교수로부터 전문한 바인데, 해교 예산 관계의 지변난과, 교수진용의미약으로 부득이 강의차 교수들이 일일히 목포까지 와서 교수하는 등 지장이 불선(不尠)한 바 있어 광주로 이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다. 만약 해사정이 사실이라면 상도(商都) 목포의 일대 수치일 뿐 불시라 당 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.

시급히 이문제의 진가여부를 규명키 위하여 문사위원회 회의에 회부, 5인위 혹은 3인위를 구성 조사 보고케 할 것을 긴급동의. 재청...7청 - 표결결과 재석 16명 전원 찬성가결 우제안자 : 김영완 의원

◆부의안

- ※ 가. 목포시직원 신원보증조례 개정의 건
- 본 건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14표 가결 우제안자 : 정응표 의원
- ※ 나. 목포시공식조례 개정의 건
- 실정에 비추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14표 가결 우제안자 : 이복주 의원
- ※ 다. 목포시의회 권한위임조례 제정의 건
 - ·본 건에 있어서는 종전부터 사실상 유형 무형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합법 적으로 성문화 한 것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33조의거 제안케 된 것이라는 행정부측의 이유설명에 대하여

◇정 응 표 의원

- 본 의원은 제안자의 1인이나 1항, 2항은 찬동하되 「3항의 경이(경미)한 청 원의 수리처결」경이라는 분구의 한계가 애매하여 이해키 곤란하니 본항의 삭제를 바라는 발언이 있자

◇이 복 주 의원

- 정 의원의 3항 삭제 동의에 찬성하며 1항은 원안대로 통고하여도 가하나 2 항 역시 지방실정에 불부(不符)하면 제정할 필요조차 없으며 유독 내무위원 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불가하니 본 항도 삭제할 것을 개의.

(개의집 찬동 없어 폐기)

◇이 재 홍 의원

- 근근 임기만료도 다될 무렵 이제야 의회권한위임조례제정이란 이해키 곤란한 문제이며 내무위원회에만 해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편파성을 띄울우려가 농후하니 본 조례안 전문을 당분간 상정보류 할 것을 재개의,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9표 가결

※ 라.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, 출 추가경정예산안 본 안에 대하여 간사 방재수로부터 제안 이유설명에 이어

◇손 백 수 의원

- 행정부로서는 조속통과 집행할 것을 희구할 것이나 남교동 공설시장비등 거액의 것이 있으니 전문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 검토케 하여 제출할 것을 동의, 재청

표결결과 재석16명중 가 15표 가결

※ 마.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, 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◇김 창 현 의원

- 본 안을 정리수자에 불가한 것이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가 있자

◇이 복 주 의원

- 본 건 역시 전문 분과위원회에 회부 검토케 할 것을 개의. 재청...3청.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1표 가결

※ 바.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설치안

본 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. 재청

우 동의제안자 : 김창현 의원

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5표 가결

※ 사.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, 출 예산안

본 안은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심 검토케 한 후 제출케 하자는 동의. 재청

우 동의제안자 : 정응표 의원

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3표 가결

◇우 전당포 문제에 있어 일전에 목포일보지상보도로서 탐지한 바이나 시내에 사설 전당포가 범람하여 월 2할이라는 고리로서 세궁민을 울린다는 사실을 알았다. 본 실정을 문교사회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한 후 사직당국에 호소케 하자는 긴급동의, 재청...7청

동의제안자 : 김영완 의원

◇이 재 홍 의원

- 참고로 말하나 사종문제를 시의회에서 조사하다는 것을 월권행위로서 곤 라한 무제라고 생각한다.

긴급동의 표결결과 재석 의원 16명중 가 7표 부결

◆기타사항

※ 가. 상수도 설치의 건

본 건에 대하여 간사 방재수로부터 나주읍장 나주읍의장 으로부터의 통고 문 낭독이 끝나자

◇정 응 표 의원

- 작일 모 나주 기관인으로부터 전문한 바인데 시장 및 관계과장이 수차현 지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라(在羅) 관계기관과는 일언반구의 상의조 차 없었다하여 대단흥분하드라는 말을 들었다. 시장은 이 문제를 여히히 생 각하는가

◇김 영 완 의원

- 본 의원도 나주출신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이 크다 전문한 바에 의하면 나주인의 반대이유는 1. 예의결례 2. 장차 설치될 비료회사의 용수문제 3. 나주읍 백년대계의 수도시설등등 인 것 같으며 그 설계에 대한 오해가 개재된 것 같으니 행정부에서는 일일속히 방나(訪羅)쌍방 합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◇이 복 주 의원

- 나주로부터의 통고문은 당 시 및 시의회를 모독한 것이다. 아즉 국가예산 도 미정한 이때 읍의회에서 사종 막연한 결의로서 공격한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다. 이 문제를 행정부에 이임한고 의회에서 밀고 나가기로 하자.

◇오 세 일 의원

- 나주 거주인에게 들은 말인데 나주읍은 수도가 불필요하다 한다. 만약 나주에 상수도를 설치하게되면 5억 환이란 막대한 금액이 나주에서 소비될 것 아닌가 나주읍민은 환영하는 것 같다.

◇하 시장

- 나주읍 및 의회에서 여러말이 있는 것 같으나 본인이 일차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있다. 그러나 이 문제를 정부서는 찬성한다하여도 OEC문제다. 근간 미(국)인기술관 일행이 내목하게 되는데 기존 수원지 제방을 구축하든가, 나주가 될지 금천면이 될지 아직 그 장소도 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근본대책도 결정짓지 안했다. 여사한사정인데 어떻게 재라기관과 상의할 것인가 어떠한 문제든지 시기가 있는 것이며, 본인은 시기상조로 보는 것이다. 이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의원 제위와도

충분한 토의를 거듭하여 선처할 방침이다.

◇이 재 홍 의원

- 그러나 이 수도문제를 급속해결하기 위하여 OEC 기술관이 내목하기 전에 의장과 나주출신인 김영완의원을 포함한 5인위원을 구성하여 나주에 급파 애걸복걸보다 인사정도로라도 여론수습을 하는 것이 가 하다는 동의. 재청. 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 가결

위원은 의장 박찬규, 김영완, 오세일, 김팔용, 이재홍 각 의원을 지명

※ 나. 항동시장 관리의 건

본 건에 대하여 간사 방제수로부터 준공 경위설명이 끝난 후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비밀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

◇이 복 주 의원

- 해 시장관리문제에 대하여 행정부로서도 상당한 난관이 개재된 것 같으니 비공개 회의에서 대체윤곽을 잡은 후 본회의에 공개 토의키로 하자는 동의.

◇정 응 표 의원

- 시민의 대 관심사인 해 시장관리문제를 비밀회의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오 해를 받기 쉬우며 부당한 처사이오니 공개석상에서 직시결의를 보자는 개 의에 이어

◇김 영 완 의원

- 항동시장설치 동기가 종전 판자옥철거당시 주민과 중동시장상인의 기본방침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니 그 한계를 명백히 한 후 비밀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재개의. 재청

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 가결

※ 바. 북교국민학교 교장관사 문제

◇이 재 홍 의원

- 북교국민학교 교장관사는 당교사친회의 소유재산이나 6.25 동란 전 취득 당시 잡종공과금의 면제를 모책하고자 사장명의로 등기 수속을 하여 두었 든 것인바 금반 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타 건물로 대체코저 하나 전기 부동 산이 시유재산 같이 되어어 등기수속상 필요하니 본 의회에서 그 매각 처 분에 대한 결의를 요망하는 발언에 이어

◇이 복 주 의원

- 시유재산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시장과 해교 사친회간에 합의 적의선처 하라는 동의.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 가결

※ 사. 회기연장

◇김 삼 성 의원

- 금차회기중 각상임분과 의원회에 회부심의케한 안건이 수다하오니 내 24 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자는 회기연장 동의. 재청

표결결과 제석 16명 만장일칠 가결.

산 회 (하오 1시 40분)

곧이어 비밀회의로 들어감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

단기 4289년 1월 34일

시의원 김 자 홍

시의원 김 필 용

작성자 주 도 식

※페이지 누락 있었음.

※ 북교국민학교장 사택 소유권 한계의 건

표기의건에 관하여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(去) 1월 30일 개최된 제 45회 당 시 의회에서 현 북교 국민학교장 사택은 단기 4283년 1월 16일 자 형편상 시장명의로 구입하여(대금 일체는 사친회경비부담) 현존하는바 금반 이를 매각처분코저 당 시의회의 회의결의를 요구하여 왔으나 본 건은 실내용이 시유재산이 아니므로 의회 권한외이기 때문에 비시유재산 이라는 것만은 결의하였음을 확인함

단기 4289년 1월 30일

목포시의회의장 박찬규

결 의 서

말미 기재의 부동산은 당 시소유이온 바 금반 전기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야 동 대금을 운용하기로 결의함.

부동산표시

목포시 북교동 177번지의 1

대지 61평

동소 177번지의 1

목조와즙 2계건 주가 1동

건평 26평 2홉 5작

외 2계 건평 10평 5흡

단기 4288년 월일

목 포 시

제45회 목포시의회 제2차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89년 2월 4일 상오 10시 40분

2. 폐 의 : 단기 4289년 2월 4일 하오 1시 25분
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
4. 사 회 : 의장 박찬규

5. 출석의원

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문택호, 김길환, 명남철, 이복주, 김창현, 진복춘, 김경현, 정웅표 의원

6. 출석공무원

시장 하동현 및 각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김용준 서기 박찬대

- 7. 의사일정
- ◆ 보고사항
- 1) 제 45회 제1차 회의록 통과
- 2) 각 분과 위원회회의 상황보고
- 3)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대표자 회의참석 결과보고
- 4) 상수도 신설 후보지 현장 답사결과보고

◆ 부의사항

- 1)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
- 2)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,출예산안
- 3) 단기 4288년도 제1회 동정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
- 4) 기타

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등 통행료 변경 진정보고 항동 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보고

- ・안강생외 7인
- •김기만 육균이등상사
- ·목포상이 용사회 전국지방의회 대표자 대회 결의문 보고
- 8. 토의사항
- ※ 가. 제45회 제1차 회의록 통과

본 건 간사 방재수 낭독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

※ 나. 각 분과위원회 회의록 상황보고

1)문사위원장 이문길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공익전당포 세입출 예산안 상환계획표 중 3개월분이자 192, 000환을 182, 000으로 삭감하고 그 차액 10, 000환을 예비비로 수정 계상키로 하여 본건통과시키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

(11시 정각 이복주, 진복춘 의원 참석 17명)

2)내무 분과의원회 김팔용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관계 제외 및 단기 4288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케 되었다는 보고에 이어

(11시 5분 명남철 의원 참석 18명)

3)산업분과위원장 진복춘 의원으로부터 산업관계 예산안 역시 원대로 무수 정 통과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음

※ 다.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대표자 회의 참석 결과보고

본 건 당시 의회 대표 참석의원 부의장 이소규로부터 동대회에서 결의한 개 항목의 결의사항을 개조적으로 낭독보고 하였음

※ 라. 상수도 신설후보지 현지 답사보고

◇이 재 홍 의원

- 본 건 여론 수습차 본 조사단 일행이 방라 먼저 나주군수 황도익을 만나 논의한 바 있는데 동군수의 말에 의하면 저반 서독기술자일행이 현장을 조 사하고 해비료 공장 시설에는 상당량의 용수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말을 남 기고 떠났다 한다. 그리하여 전반의 통고문을 발송케 된 것이라 하며 그후 나주 읍장 및 유지등과 합석 예히 조사케한 당 시건설과장 등이 기술적인 감정내용 즉 동지역의 1일 평균유수량 93만톤을 예상하며 당시의 상수도 공 사가 추진된다 하드라도 그 100분지 1인 1만톤 가량만 할애하면 되는 것이 라는 것 등을 역설 화기애애한 가운데 피차 완전합의를 보게 되었으니 우선 시급한 대책으로 당 시의회에서 1인을 파견 나주읍 의원 1인과 동도 재 서 울 서독기술진을 만나 전서 유수량의 정확한 양과 할애여부의 정확한 점을 타진키로 하자는 동의.

◇김 남 진 의원

- 이재홍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본 건 추진에 있어서는 저반 방라한 의원들에게 일임하자는 첨가동의

◇이 세 일 의원

- 금조의 광주신보의 지상을 보면 아즉도 나주읍 의장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다는 말에 이어

◇김 삼 성ㆍ이 소 규 의원

-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순서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나주읍 의장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당 시의회에서 재차 심라케하여 이 문제를 종용 후 동류의원 1인과 동행 상경하자는 개의

표결결과 재석 18명 만장일치 가결

◇김 영 완 의원

- 규모가 큰 함흥 질소비료 공장 등을 인용 절대성사 시킬 가능이 있다는 점의 발언이 있었음

◇김 남 진 의원 깁급동의

- 금조 목포일보 지상에 의하면 「재정법 무시한 각종 공사입찰·시민의 부담조 장·업자와 내통하고 취익(取益) 낭비하다」라는 제목으로 행정부와 시의원 업자간에 결코 불미 시러운 처사를 한 것처럼 기사내용이 되어 있는 즉 그 사실여부의 진상규명을 하여야겠으니 행정부와의 질의요청에 긴급동의, 재청.

◇김 삼 성 의원

- 중앙국민학교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니 교육청 서무과장을 출석케 하자는 첨가 동의.

표결결과 재석 18명 만장일치 가결

◇김 영 완 의원

- 이 문제에 대하여 시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항동시장 입주자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에 책임 전가한 사실의 유무

♦산업과장

- 언어도단이다 그러한 사실은 전무하다

◇이 복 주 의원

- 연동공설시장 문제에 있어 그 사양서에 옥상의 양철 28번임을 깡통으로

변경한 이유

◇김 경 현 의원

- 항동시장의 사양서에도 28번으로 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가인 31번 양철로 변경한 이유

◇김 영 완 의원

- 1. 3대공사의 입찰은 완전무결하다고 보는가
- 2. 사양서와 변경한 사실의 유무
- 3. 입찰 시 청부업자와 결탁한 사실의 유무

◇김 삼 성 의원

- 개정법을 무시하고 낙찰시킨 이유해명

◇임 일 남 의원

- 설계 변경 당시 행정부 자유재량으로 임의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가

◇김 삼 성 의원

- 예산조치 및 입찰 낙찰 일자로 보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물가의 등귀를 초래한 것은 행정부의 실수로 기인된 것이 아니냐

◇손 백 수 의원

- 연동시장 준공 검사당시 그 건축에 대한 허다한 손색점도 발견 하였는 것이다.

◇총무과장

- 이 문제는 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있어 기인할 작난인 것 같으며 28번 양철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구득 할 방도가 없어 부득이 32번으로 대체 한 것이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최종지불일자에 납부키로 업자로부터 차압서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정법 무시란 언어도단이며, 해당조례의 입법취지도 각 업자의 무리한 액면으로 입찰케 하여 조잡한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특수공사의 특수재사용 등등 조건으로 예정가격

에 근사 입찰자에게 낙찰케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. 또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

◇ 건설과장

- 3차에 궁하여 일반경쟁입찰에 회부케 되었으며 연동시장이 그 당시 고정 된 예산에 급작히 물가등귀로 인하여 부득이 깡통 양철을 사용하게 되었다 는 경위설명

◇김 삼 성 의원

- 중앙국민학교 문제내용을 질의

◇교육청 서무과장

- 입찰순서와 경위설명이 있은 후 시 총무과장이 말한바와 같이 꼭 같은 이유로는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곤란한 입찰자에게 낙찰시키게 된 것이며 예정 가격도 교육위원들과 타협 후 입찰 1분전에 교육감 단독 결정하였든 것입니다.

◇이 재 홍 의원

- 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3인정도의 조사위원을 구성 조사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종결짓자는 동의

◇진 복 춘 의원

- 3인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을 선정 6인으로 구성하자는 개의 동의집 수락

표결결과 재석 18인 만장일치 가결

-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의원을 지명

내무 : 김팔용, 임일남

산업 : 진복춘, 이재홍

문사 : 이복주, 김경희

• 하오 1시 25분 오전회의를 산회하고 하오 2시 30분부터 속개할 것을 선

언

· 하오 2시 25분 성원미달 유회 하고 내2월 6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언

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

단기 4288년 2월 4일

시의원 손 백 수

시의원 진 복 춘

작성자 주 도 식

제45회 제 3차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89년 2월 6일 상오 10시 35분

2. 폐 의 : 단기 4289년 2월 6일 하오 12시 50분
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
4. 사 회 : 의장 박찬규

5. 출석의원

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삼성, 이복주, 김남진, 문택호, 김길한, 이문길, 김경희의원

6. 출석공무원

시장 하동현 및 각과장 서기 박찬대

- 7. 의사일정
- ◆ 보고사항
- 1)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 등 통행로 원상복구진정
- 2) 항동시장점포 임차사용 진정보고
 - ・안강생외 7인
 - · 김기만 육군이등상사
 - · 목포상이용사회
- ◆ 부의사항

- 1)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
- 2) 단기 4288년도 제1회 동정 특별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
- 3)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,출 예산안

8. 토의사항

※ 가.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등 통행로 원상복구진정의 건

◇손 백 수 의원

- 객년 12월중부터 실시하여온 연동 일방도로야 말로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중점으로 하였던 것이나, 목포직물회사를 지나올라 후미끼리(踏切: 철도건널목)장치가 되어있지 않어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4미터밖에 안된 협소한 곳에다 30도 경사치로 되었으며 형무소 서문부근 각우(모퉁이)등 추락의 위험성이 농후한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일취월장 발전도상에 있는 육로관문인연동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수업자 등 시간적, 경제적으로무단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니 종전대로 원상복구 하겠금 당국에 건의하기로 본 의회에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.

(10시 45분 김삼성의원 참석 14명)

◇이 재 홍 의원

- 이 문제 대하여는 당 의회의 위신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. 어느 때는 일방도로를 적극 진정하여 놓고, 또 다시 원상복구를 결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로 생각한다.

◇임 일 남 의원

- 운반관계의 불편과 시간의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동차는 현재대로 실시하되 우마차는 종전대로 통행케 하는 것이 가(可)라고 사료됩니다.

◇김 자 홍 의원

- 본 의원은 과거 일방도로 추진위원의 1인이 있으나 의회의 위신상은 불 가한 일이로되 3인위를 구성, 경찰국에 파견 진정키로 하는 것이 가(可)라 고 생각한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이 문제에 대하여 과거 일방도로 추진시 김남진 의원의 동의로 만장일치 가결 된 것이 아닌가 김남진 의원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 는 말을 들었다. 행정부당국은 학생통로 등을 부설 할만한 복안은 없는가

(11시 40분 이복주 의원 참석 15명)

◇김 삼 성 의원

- 연동도로는 목포발전의 요소이며 동맥일 것이다. 행정부당국은 해 도로의 폭을 넓이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도와 교섭하여 선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.

♦시장

- 목포직물회사 근방도로의 위험성을 제거키 위하여 명년도 예산에나 계상 착수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.

◇김 삼 성 의원

- 예산면으로 도비 보조 등 행정부에서 추진키로 하고 3인 위원을 구성 사전에 원상복구 교섭위원을 관계 당국에 파견할 것을 개의. 재청

표결결과 재석 15명중 가 14표 가결

교섭위원은 이소규, 진복춘, 손백수 의원을 지명

※ 나. 항동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 보고

본 건 서기 박찬대로부터 각 진정서 내용의 낭독이 끝나자

◇이 재 홍 의원

- 본 건에 대하여는 당 의회에서는 관여 안키로 결의한 것이니 행정부로 이송할 것을 동의, 재청

표결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 가결

※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◇김 자 홍 의원

-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심심 검토 심의한 것이니 원안대로 무수정통과 할 것을 동의. 재청...3청

◇이 복 주 의원

- 본 예산면을 검토컨대 남교동 시장 예산 등 막대한 것이 있으나 종전 중동 시장 등의 예로 보아 예산통과는 시켜 놓고 행정부에서의 집행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니, 상수도 문제와 관련시켜 시기적으로 조기 일 경우에는 그 사 도변경(使途變更)할 것을 전제로 원안통과할 것을 첨가동의. 3청. 동의집 수 락

표결결과 재석 15명중 가 13표 가결

※ 라. 단기 4288년도 제1회 동정특별회계 세입,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◇손 백 수 의원

- 본 건 역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. 재청...3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 가결
- ※ 마.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,출 예산안

◇손 백 수 의원

-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중 가결 13표 가결

◇김 삼 성 의원 긴급동의

-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 행정부 사무감사를 오는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것을 긴급 동의

◇시 총무과장

-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는 행정부의 사정이 전도적(全道的)으로 말위(末位)란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점하고 있는 당 시 국채소화독려로 금월 말일까지 청원총동원 전력할 것을 결정 진바 있으며 근근 중앙으로부터도 사무 감

사반이 내도할 것 같은 실정으로서 그 시기를 좀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한다는 발언이 있자

◇김 삼 성 의원

- 그렇다면 그 입장을 참작하여 내3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궁하여 실시할 것을 수정동의. 재청

표결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 가결

◇손 백 수 의원 긴급동의

- 거반 실시하였든 시내 판자옥 철거시 회피 철거자 137호가 연동 뻘바탕으로 이주하여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호양곡을 우선적으로 시배(施配)하여야 할 판자옥 철거 주민의 게는전연 없고 보광동 둥지 중앙동 거주민으로 더 생계가 부유한 층으로 배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으니 본 건 진상조사위원을 구성 조사케 할 것을 긴급 동의.

◇김 영 완 의원

- 본 건에 대하여 피 철거자로서 판자옥 철거전의 구호양곡 수배자가 몇 명이며 철거 후(연동으로 이주 후)의 수배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연동으로 피 철거자들이 이주 후는 해당동에 얼마쯤이나 증배하였는지 행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.

♦사회과장

- 과거와 달라 근경(近頃)에는 극소량의 구호양곡이 오는데 본 건 배당에 애로가 극심할 뿐 아니라 종전의 전표제를 폐지하고 동장 책임하 피 대상자로 하여금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는 관계상 여러가지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가지 수량등은 세밀히 조사하여 차기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.

◇이 소 규 의원

- 거(去) 4일부터 목포일보기사 사건에 대하여 언론계에 요청하는 바이나 시의회나 행정부 등을 망라하여 비난하는 것보다 당 시 전반적으로 대외적 영향에 미치는 것이 지대하오니 개별적으로 지적 그 시비를 열거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음

·하오 12시 50분경 제45회 의회의 폐회할 것을 선언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

단기 4289년 2월 6일

시의원 손 백 수

시의원 진 복 춘

작성자 주 도 식